

2020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총칙

제1조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2020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3,801,607,155원, 세입·세출의 명세는 '세입·세출 명세서'와 같다.
추경의 필요성과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.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|--|
| 추경의 필요성 | -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입 증액 |
| 주요 변경사항 | <p>1. 세입 : 사업수입 증가(+6,000천원)</p> <p>2. 세출 가. 인건비 증가(+21,186천원) 나. 업무추진비 증가(+300천원) 다. 예비비 증가(+20,144천원) 라. 운영비 감소(-1,100천원) 마. 사업비 감소(-34,500천원)</p> |

제2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다.

제3조 2020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다.

제4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액의 10% 범위로 한다.

제5조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, 지정후원금 등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시설장이 명시된 내역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신설된 사업 중 수익자부담경비인 사업수입세입에 의하여 지출되는 강사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그 수입의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시설장이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세출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
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

